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3825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10. 31.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D(E생, 주소: 여주시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2. 9.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157,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57,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에 대하여 44,609,313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D의 모 G가 2022. 4. 1. 사망하였고(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로 자녀 H, D, I, J이 있었으며, 자녀 중 망 K은 2013. 4. 30.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 L과 자녀 M, 피고가 있었다. D은 망인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합계 125,098,36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여주시 N 전 129㎡, 및 O조합출자금(증권번호 P)채권이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2022. 9. 29.경 위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은 J,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위 N 토지 및 O조합출자금 채권은 H이 단독 소유하며, D은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D 자신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2013년경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이던 여주시 Q 및 R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45,000,000원을 받았고, 2015. 10. 21.경에는 위 각 토지를 매각한 대금 102,311,000원을 받는 등 특별수익을 받았고, 기여분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재산 분할결과가 D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분 등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을 제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24.경 망인 소유이던 여주시 Q 대 158㎡, R 전 413㎡에 관하여 채무자 S, 근저당권자 T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7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S이 2013. 4. 29. D에게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S과 사이의 소비대차 또는 증여 등 법률관계에 의하여 위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망인으로부터 45,000,000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다른 어떠한 특별수익을 받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보존에 특별히 기여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기여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므로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2.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인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U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83,220,000원(= 토지 21,648,000원 + 건물 61,572,000원)이고, 위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0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8,322,000원(= 83,220,000원 × 피고의 1/2 지분 × 상속지분 1/5)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4,609,31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44,609,313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6,157,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6,157,2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구자광

별지